

4. 물적요건

1. 연구공간

-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,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-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㎡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,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
- 무허가건물, 가건물,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

❖ 연구공간의 설치 기준

- 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
- 연구소의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,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
- 연구소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
 - 공조, 소방 등 건축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바닥에서 최소 2m이상의 높이 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
 -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,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- 소기업 기업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및 정보처리분야 전담부서(전용 면적 30㎡이하)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·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·책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

❖ 연구공간의 면적 확보 기준

-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(연구전담 요원, 연구보조원, 관리직원)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
-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거나, 뚜렷한 사유가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 -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,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오픈된 공간을 말함

❖ 연구소 현판 부착 의무

- 연구소용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
 - 연구소가 독립건물 일 경우 건물 입구, 1층을 전체를 쓸 경우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,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
 - 회사 출입구나 건물 안내판에 연구소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
-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레스, 플라스틱,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
-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
-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
 - 연구소 :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소, 기술연구소, R&D Center, 연구원, 연구센터 등 가능
 - 전담부서 : 연구개발전담부서, 연구실, 연구부, 개발실, 개발부 등 가능

❖ 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 경우

-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
 -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, 베란다의 임의 용도전용,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, 조립식 건물, 가건물 등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

»Q&A

1.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가능한지
☞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소로 등록된 독립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연구소가 협소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.
2.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, 실험실만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

- ☞ 실험실뿐만 아니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을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. 사무공간을 타 업무부서와 같이 사용한다면 인정 불가합니다.
3. 연구소 사무실과 실험실로 연구소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
 - ☞ 연구소로 등록할 공간이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소재지가 다른 경우 연구원이 각각 상시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주소소재지와 부소재지로 신청 가능합니다.
 4. 물적 기준에 따라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상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
 - ☞ 건축물 관리대상상에 교육연구시설, 사무실,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으며, 주거(주택)용은 기업연구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
 5. 연구소 설립신고 이후 연구사업 활성화로 연구소 인력이 상당수 증원이 되어 연구 공간 면적에 비해 연구소 인력이 무리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
 - ☞ 연구개발 활동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한 후 면적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이 경우 기존의 공간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장소와 다른 소재지에 독립된 공간(최대 2개소까지만 가능)을 확보 할 수도 있습니다.
 6. 전대차계약을 한 공간에서도 연구소·전담부서 설립을 할 수 있는지
 - ☞ 명확하게 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.
 7. 연구소 공간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 연구소가 독립공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
 - ☞ 출입문이 있어야 독립 공간으로 물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기업 기업연구소등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등인 경우 30m² 이하의 경우는 타부서와의 구분을 위한 파티션으로도 가능합니다.
 8. 건축물대상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
 - ☞ 가압류, 근저당 등의 설정이 되어 있어도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.
 9. 건물내 복층공간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
 - ☞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공간이 건축물대상상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(상층)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복층 중 하층(건축물대상상 합법적인 공간)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

2.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

-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, 시제품 제작설비,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하고 전용이어야 함
- 사무비품(PC, 복사기 등) 및 기본측정기구(버니어캘리퍼스, 마이크로미터 등)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
-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(S/W)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

❖ 연구기자재

-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 안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
 -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고,
 -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고, 제조,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
-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, 신고한 연구사업개요서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 - 개인용 PC, 사무책상, 팩스, 복사기, 모니터 등 사무집기와 서버, 허브 등과 같이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
 -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용 PC 및 개발용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됨
-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하지 않음
 - 버니어캘리퍼스, 마이크로미터, 전자저울, 다이얼게이지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정장비

❖ 부대시설

-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소 전용으로 제작한 구축물은 부대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
 - 파일롯트 설비, 시험로, 주행시험장, 시험용 폐수처리장 등
- 연구소 직원만 활용하는 기업연구소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 - 연구소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,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절한 면적일 것
 -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 직

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기숙사, 주차장,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
 - 연구소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, 연구소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»Q&A

1.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/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
 - ☞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/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연구기자재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 연구기자재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 2.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, S/W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
 - ☞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, S/W(MS오피스, 한글 등)는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연구분야가 정보처리, 디자인, 제품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PC 나 S/W(캐드, 일러스트 등)로 연구소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이 됩니다.
 3. 저희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연구소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시공간도 연구소 면적에 포함되는지
 - ☞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시공간은 연구소 부대시설로서 연구소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전시관이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연구소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없으며, 따라서 연구소 면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.
-